

일·생활 균형 문화 확산과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**2024년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제도**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▣ **지원대상:** 우선지원 대상기업(중소기업)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

▣ **지원유형:** 재택근무, 원격근무, 선택근무, 시차출퇴근

\* 시차출퇴근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만 해당

▣ **지원요건**

-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·승인
  -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
  - ③ 근로계약서 작성(모든 유형), 취업규칙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등 제도 마련(선택근무 해당)
  - ④ 전자,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, 단, 재택·원격근무의 경우는 재택·원격근무를 했다는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도 가능 <첨부> 자료 참고
  - ⑤ 시차출퇴근은 출·퇴근 시각을 기존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에서 최소 30분이상 변경
- \* 유형별 세부 요건은 <첨부1> 자료 참조

▣ **지원내용:**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**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**

유형	1개월 지급액		최대 지급한도
재택·원격근무	15만원 (월 6일~11일 활용)	30만원 (월 12일 이상 활용)	360만원
시차출퇴근	10만원 (월 6일~11일 활용)	20만원 (월 12일 이상 활용)	240만원
선택근무	30만원 (월 6시간 이상 단축,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)		360만원

- \*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·원격·선택근무는 월 10만원 추가 지원
- \* (지원한도)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% 한도 내 최대 70명 지원
- \* (신청주기)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

▣ **지원절차**



▣ **신청방법**

신청단계	제출서류	제출방법
사업계획서	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(서식1) 첨부서류(서식1의 하단 참고)	관할 고용센터 제출 또는 온라인 신청
지원금 신청	지원금신청서(서식2) 첨부서류(서식2의 하단 참고)	관할 고용센터 제출 또는 온라인 신청

\* (온라인 신청경로) 고용24(www.work24.go.kr) 접속 → 기업회원 로그인 → 기업지원금 → 유연근무

※ (문의) 국번없이 1350,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